◈ 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◈

○ 전문위원 이 재호 입니다.

○ 「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은 시장이 2006년 4월 19일 제출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4월 4일 간담회시 사전설명을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.

○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및 내용은 앞서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2005. 12월말 기준으로 하수도 현실화율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30.1%로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,

○ 2010년까지 현실화율을 100%로 높이고자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여 하수처리장 건설 등 수질환경

개선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.

□ 주요골자

○ 법령명 띄어쓰기 규정에 의하여 "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"를 "양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"로 제명을 개정함(제명)

○ 하수처리장 건설 등 수질환경 개선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하수도사용료 요율표를 개정함(안 제13조제2항)

【하수도사용료 평균 30%인상 : 판매단가
(1톤당 당초 236.1원, 인상 306.9원)】

【 검토결과 】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양주시의 2005년말 기준 하수처리 원가는 톤당 782.2원이고, 하수도 사용료 단가는 236.1원으 로 30.1%의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으며,

○ 의정부시는 62%('04년), 고양시 44.8%(' 05년), 파주시 97.3%('05년), 동두천시 32%('05년),
연천군 29%('05년)로 인근 자치단체와 비교하여
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

○ 하수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장래 하수도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 요인에 대비하고 처리원가 대비 2010년까지 하수도 요금수준 현실화율 100%를 목표로 단계적 인상 추진이 불가피하여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

○ 현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30.1%에 불과한 실정이나 30%를 인상할 경우 현실화율이 39.2%로 년차적으로 인상 현실화율의 폭을 축소하여

○ 급격한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하수처리장 건설 등 수질환경 개선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 하고자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

○ 소비자보호법 제23조 및 양주시 소비자 보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2월 17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